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2018.11.23.)

조례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의안번호 제2018 - 86호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02.

나. 제 출 자 :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권재경·심재수·최정환·김태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0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1. 21.

2. 개정이유

○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시 그리는 벽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시 벽화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18 - 87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02.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0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1. 21.

2. 개정이유

○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 확대.(안 제5조)

○ 2천만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나. 명칭변경.(안 제6조)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착한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변경.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함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18 - 88호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02.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18. 11. 0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1. 21.

2. 제안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비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의회 동의절차를 신설.(안 제12조제4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름.

나.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등 변동사항 대하여 개별법에 따른 각각의 조례로 규정하기보다 총괄적인 공유재산 관리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